

의안번호	2200062
의 퇴 인	김승수의원
회 답 일	2024. 07. 25.
추계번호	24D03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되도록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2029년 기간 동안 9,503억 400만원(연평균 1,900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연평균
기존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인상	117,899	143,885	175,156	213,326	259,688	909,953	181,99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5,991	6,887	7,916	9,099	10,459	40,352	8,070
합계	123,890	150,771	183,071	222,425	270,147	950,304	190,0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소득산정 범위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으로 한정함(제1항) 지급액을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안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안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안 제63조(양로지원)	부양의무자 개념을 동거가족으로 대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	-
2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안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안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안 제63조(양로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있으나, 추계에서는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¹⁾을 충족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있음
 - (기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인상) 기존 생활조정

1)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7호) 제8조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당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월지급액을 인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추가 편입)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
 - (소득액과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합산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추가 편입)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미만인 경우 추가로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편입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
- (기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의 지급액 인상) 국가유공자와 그 동거가족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자료의 부재로 다음과 같이 가정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경우는 중간값인 45%로 가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40% 이하는 중간값인 36%로 가정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32%의 소득을 보장받으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32%로 가정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추가 편입) 국가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이들의 소득인정액은 중간값인 45%로 가정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이 되도록 인상함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추가 편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60%미만인 국가유공자의 규모,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등 자료 부재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기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의 지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1) 대상자 수

- 국가보훈부는 2024년 현재 가구원수를 3명 이하 및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소득인정액은 32% 이하, 40% 이하, 50% 이하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표 2]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월지급액

(단위: 천원)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¹⁾ 비교 기준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2명 이하	가구당 ²⁾ 가계지출비	50% 이하	242
		40% 이하	277
		32% 이하	311
3명	기준 중위소득 ³⁾	50% 이하	242
		40% 이하	277
		32% 이하	311
4명 이상		50% 이하	300
		40% 이하	336
		32% 이하 ¹⁾	370

주: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

2) “가구당 가계지출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의미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여 재작성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수별 수급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으로 2023년까지 수급인원 기준(최고수당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과 2024년(최고수당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인원 기준 차이로 인해 2024년 수급인원을 배제하고 산정한 2020~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13.7%임

[표 3]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소득수준별 수급인원: 2020~2024년

(단위: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2020 ~2023)
3명 이하	50% 이하	1,005	1,173	1,418	1,336	3,241	10.0
	40% 이하	1,773	1,823	1,625	1,896	2,140	2.3
	32% 이하 ¹⁾	6,529	8,068	9,725	10,648	11,923	17.7
4명 이상	50% 이하	135	157	112	99	137	-9.8
	40% 이하	123	232	114	112	97	-3.1
	32% 이하 ¹⁾	210	144	241	265	294	8.1
합 계		9,775	11,597	13,235	14,356	17,832	13.7

주: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일부 개정(시행 2024. 1. 12.)으로 2023년까지 30% 이하인 수급인원이며, 2024년은 32% 이하 수급인원임

자료: 국가보훈부

□ 향후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수를 연평균 증가율 13.7%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 기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20,269	23,040	26,189	29,768	33,837	13.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2023년 기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의 소득수준별 가구원수 구성비는 아

래 표와 같음

[표 5] 기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소득수준별 가구원수별 구성비: 2023년

(단위: 명, %)

가구원수	수급자수			구성비		
	중위50%이하	중위40%이하	중위32%이하	중위50%이하	중위40%이하	중위32%이하
1	852	1,211	7,382	5.93	8.44	51.42
2	404	568	2,542	2.81	3.96	17.71
3	89	126	550	0.62	0.88	3.83
4	60	70	273	0.42	0.49	1.9
5	25	22	116	0.17	0.15	0.81
6	1	9	32	0.01	0.06	0.22
7	3	2	18	0.02	0.01	0.13
8	0	0	0	0	0	0
9	1	0	0	0.01	0	0
합계	14,356			100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 기준 기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의 소득수준별 가구원수별 구성비([표 5])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기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수 추정치([표 4])를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소득수준별 가구원수별 기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가구 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중위 50% 이하	중위 40% 이하	중위 32%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	1,202	1,711	10,422	1,366	1,945	11,847	1,553	2,210	13,466	1,765	2,512	15,307	2,007	2,856	17,399
2	570	803	3,590	647	912	4,080	736	1,037	4,638	836	1,179	5,272	951	1,340	5,993
3	126	178	776	143	203	882	162	230	1,003	185	262	1,140	210	298	1,296
4	85	99	385	97	113	438	110	128	498	125	146	566	142	166	643
5	34	30	164	39	35	187	45	39	212	51	45	241	58	51	274
6	2	12	45	2	14	51	3	16	58	3	18	65	3	20	74
7	4	2	26	5	2	30	5	3	34	6	3	39	7	3	44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2	0	0	2	0	0	3	0	0	3	0	0	3	0	0
합계	20,269			23,040			26,189			29,768			33,83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5년간(2020~2024년) 생활조정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 2020~2024년

(단위: 천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인상률 (%)
3명 이하	50% 이하	214	220	220	220	242	3.1
	40% 이하	245	252	252	252	277	3.1
	32% 이하	275	283	283	283	311	3.1
4명 이상	50% 이하	265	273	273	273	300	3.1
	40% 이하	296	305	305	305	336	3.2
	32% 이하	326	336	336	336	370	3.2

주: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일부 개정(시행 2024. 1. 12.)으로 2023년까지 30% 이하의 월지급액이며, 2024년은 32% 이하 월지급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최근 5년간 생활조정수당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

여 추계기간 동안의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8]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인상률 (%)
3명 이하	50% 이하	250	257	265	274	282	3.1
	40% 이하	286	295	304	313	323	3.1
	32% 이하	321	331	341	352	363	3.1
4명 이상	50% 이하	309	319	329	340	350	3.1
	40% 이하	347	358	370	381	394	3.2
	32% 이하	382	394	407	420	433	3.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9]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1인	1,757	1,828	1,945	2,078	2,228	6.1
2인	2,992	3,088	3,260	3,456	3,683	5.3
3인	3,871	3,984	4,195	4,435	4,715	5.1
4인	4,749	4,876	5,121	5,401	5,730	4.8
5인	5,628	5,757	6,025	6,331	6,696	4.4
6인	6,506	6,629	6,907	7,228	7,618	4.0
7인	7,390	7,497	7,781	8,108	8,515	3.6
8인	8,273	8,366	8,654	8,987	9,412	3.3
9인	9,156	9,234	9,528	9,867	10,308	3.0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0] 기준 중위소득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1인	2,365	2,510	2,663	2,826	2,999	6.1
2인	3,879	4,086	4,303	4,533	4,774	5.3
3인	4,953	5,203	5,466	5,743	6,033	5.1
4인	6,005	6,294	6,596	6,913	7,245	4.8
5인	6,993	7,303	7,628	7,966	8,320	4.4
6인	7,925	8,244	8,575	8,920	9,279	4.0
7인	8,822	9,140	9,470	9,812	10,166	3.6
8인	9,720	10,038	10,367	10,707	11,058	3.3
9인	10,618	10,937	11,266	11,605	11,954	3.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 증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추정액의 60%에서 소득인정액과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생활조정수당 추정액을 차감하여 산정

-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을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거가족 소득인정액²⁾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국가유공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경우는 소득구간의 중간값인 45%로, 32% 초과 40% 이하 경우는 중간값인 36%로 가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통해 중위소득 32%는 보장받으므로 중위소득 32%로 가정함

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이후 생략)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3.~20. (생략)

[표 11]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증가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 소득 60% (a)	국가유공자 소득인정액 (b)			생활조정수당 (c)			개정안에 따른 지급증가분 (a-b-c)		
			50% 이하 (중위 45%가정)	40% 이하 (중위 36%가정)	32% 이하 (중위 32%가정)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2025	1인	1,419	1,064	851	757	250	286	321	105	282	341
	2인	2,327	1,745	1,396	1,241	250	286	321	332	645	765
	3인	2,972	2,229	1,783	1,585	250	286	321	493	903	1,066
	4인	3,603	2,702	2,162	1,922	309	347	382	591	1,094	1,300
	5인	4,196	3,147	2,517	2,238	309	347	382	740	1,332	1,576
	6인	4,755	3,566	2,853	2,536	309	347	382	879	1,555	1,837
	7인	5,293	3,970	3,176	2,823	309	347	382	1,014	1,770	2,088
	8인	5,832	4,374	3,499	3,110	309	347	382	1,149	1,986	2,340
	9인	6,371	4,778	3,823	3,398	309	347	382	1,283	2,202	2,591
2026	1인	1,506	1,129	903	803	257	295	331	119	308	372
	2인	2,451	1,839	1,471	1,307	257	295	331	355	686	813
	3인	3,122	2,342	1,873	1,665	257	295	331	523	954	1,126
	4인	3,776	2,832	2,266	2,014	309	347	382	635	1,164	1,380
	5인	4,382	3,287	2,629	2,337	309	347	382	786	1,406	1,663
	6인	4,946	3,710	2,968	2,638	309	347	382	927	1,632	1,926
	7인	5,484	4,113	3,291	2,925	309	347	382	1,062	1,847	2,177
	8인	6,023	4,517	3,614	3,212	309	347	382	1,196	2,062	2,429
	9인	6,562	4,922	3,937	3,500	309	347	382	1,331	2,278	2,681
2027	1인	1,598	1,198	959	852	265	304	341	134	335	405
	2인	2,582	1,936	1,549	1,377	265	304	341	380	729	864
	3인	3,280	2,460	1,968	1,749	265	304	341	555	1,008	1,190
	4인	3,958	2,968	2,375	2,111	329	370	407	660	1,214	1,440
	5인	4,577	3,432	2,746	2,441	329	370	407	815	1,461	1,729
	6인	5,145	3,859	3,087	2,744	329	370	407	957	1,689	1,994
	7인	5,682	4,262	3,409	3,030	329	370	407	1,091	1,903	2,245
	8인	6,220	4,665	3,732	3,318	329	370	407	1,226	2,119	2,496
	9인	6,760	5,070	4,056	3,605	329	370	407	1,361	2,334	2,748
2028	1인	1,696	1,272	1,017	904	274	313	352	150	365	440
	2인	2,720	2,040	1,632	1,450	274	313	352	406	775	917
	3인	3,446	2,584	2,067	1,838	274	313	352	588	1,065	1,256
	4인	4,148	3,111	2,489	2,212	340	381	420	697	1,278	1,516
	5인	4,780	3,585	2,868	2,549	340	381	420	855	1,531	1,811
	6인	5,352	4,014	3,211	2,855	340	381	420	998	1,759	2,078
	7인	5,887	4,415	3,532	3,140	340	381	420	1,132	1,973	2,327
	8인	6,424	4,818	3,854	3,426	340	381	420	1,266	2,188	2,578
	9인	6,963	5,222	4,178	3,714	340	381	420	1,401	2,404	2,829
2029	1인	1,799	1,350	1,080	960	282	323	363	168	397	477
	2인	2,865	2,148	1,719	1,528	282	323	363	434	823	974
	3인	3,620	2,715	2,172	1,931	282	323	363	623	1,125	1,327
	4인	4,347	3,260	2,608	2,319	350	394	433	736	1,345	1,595
	5인	4,992	3,744	2,995	2,662	350	394	433	898	1,603	1,896
	6인	5,568	4,176	3,341	2,969	350	394	433	1,042	1,833	2,165
	7인	6,099	4,574	3,660	3,253	350	394	433	1,175	2,046	2,413
	8인	6,635	4,976	3,981	3,538	350	394	433	1,308	2,260	2,663
	9인	7,172	5,379	4,303	3,825	350	394	433	1,443	2,475	2,91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생활조정수당 소득수준별 가구원수별 수급자수 추정치([표 6])와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증가액 추정치([표 11])를 곱하면, 2025~2029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9,099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연간지급액 증가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가구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중위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	
1	1,517	5,788	42,703	1,952	7,181	52,877	2,499	8,897	65,383	3,183	11,007	80,745	4,037	13,599	99,598	400,966
2	2,271	6,215	32,969	2,762	7,511	39,819	3,357	9,073	48,080	4,078	10,958	58,040	4,951	13,231	70,047	313,363
3	744	1,933	9,932	897	2,322	11,926	1,081	2,788	14,318	1,302	3,348	17,188	1,568	4,020	20,630	93,996
4	604	1,304	6,006	737	1,577	7,251	871	1,869	8,599	1,046	2,237	10,288	1,256	2,676	12,307	58,628
5	306	486	3,105	369	583	3,724	435	689	4,401	519	820	5,239	620	976	6,236	28,510
6	21	227	983	26	271	1,172	30	318	1,379	36	377	1,633	42	447	1,934	8,895
7	49	43	660	59	51	783	69	60	917	81	70	1,081	95	83	1,274	5,375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31	0	0	37	0	0	43	0	0	50	0	0	59	0	0	219
합계	117,899			143,885			175,156			213,326			259,688			909,9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부양의무자 유무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1) 대상자

- 현행법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³⁾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7호)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40% 이하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⁴⁾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한편,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2023년부터 수급자가 중상이자인 경우, 2024년부터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 따라서 2024년 현재 소득기준으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5세 미만이면서 중상이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됨
- 개정안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는 2024년 6월 기준 953명임

[표 1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 현황: 2024.6월
(단위: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합 계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13,253	59	13,312
	미수급자	658	295	953
	합 계	13,911	354	14,265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 수에 추계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연평균 증가율 8.9%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를 추정

4)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표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8~2022년

(단위: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1,743,690	1,881,357	2,134,186	2,359,672	2,451,458	8.9

자료: 국가통계포털

[표 1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	1,038	1,130	1,230	1,340	1,459	8.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의 추정은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비([표 5] 중 40% 초과 50% 이하 열 참조)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를 가구원수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6]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0%~50%인 경우의 가구원수별 구성: 2023년

(단위: 명, %)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합계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852	404	89	60	25	1	3	0	1	1,435
비중	59.4	28.2	6.2	4.2	1.7	0.1	0.2	0.0	0.1	100.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가구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1	616	671	731	795	866
2	292	318	346	377	411
3	64	70	76	83	90
4	43	47	51	56	61
5	18	20	21	23	25
6	1	1	1	1	1
7	2	2	3	3	3
8	0	0	0	0	0
9	1	1	1	1	1
합계	1,038	1,130	1,230	1,340	1,45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신규로 받게 되는 수급자 역시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되도록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들 신규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증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음

[표 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지급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 소득 60% (a)	추가 수급자 소득인정액 (b) 40% 초과~50% 이하 (중위 45%가정)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a-b)
2025	1인	1,419	1,064	355
	2인	2,327	1,745	582
	3인	2,972	2,229	743
	4인	3,603	2,702	901
	5인	4,196	3,147	1,049
	6인	4,755	3,566	1,189
	7인	5,293	3,970	1,323
	8인	5,832	4,374	1,458
	9인	6,371	4,778	1,593
2026	1인	1,506	1,129	376
	2인	2,451	1,839	613
	3인	3,122	2,342	781
	4인	3,776	2,832	944
	5인	4,382	3,287	1,096
	6인	4,946	3,710	1,237
	7인	5,484	4,113	1,371
	8인	6,023	4,517	1,506
	9인	6,562	4,922	1,641
2027	1인	1,598	1,198	399
	2인	2,582	1,936	645
	3인	3,280	2,460	820
	4인	3,958	2,968	989
	5인	4,577	3,432	1,144
	6인	5,145	3,859	1,286
	7인	5,682	4,262	1,421
	8인	6,220	4,665	1,555
	9인	6,760	5,070	1,690
2028	1인	1,696	1,272	424
	2인	2,720	2,040	680
	3인	3,446	2,584	861
	4인	4,148	3,111	1,037
	5인	4,780	3,585	1,195
	6인	5,352	4,014	1,338
	7인	5,887	4,415	1,472
	8인	6,424	4,818	1,606
	9인	6,963	5,222	1,741
2029	1인	1,799	1,350	450
	2인	2,865	2,148	716
	3인	3,620	2,715	905
	4인	4,347	3,260	1,087
	5인	4,992	3,744	1,248
	6인	5,568	4,176	1,392
	7인	6,099	4,574	1,525
	8인	6,635	4,976	1,659
	9인	7,172	5,379	1,79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 추정치([표 17])와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증가액 추정치([표 18])를 곱하면, 2025~2029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403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가구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1	2,623	3,031	3,502	4,047	4,676	17,878
2	2,040	2,340	2,683	3,078	3,530	13,670
3	574	656	751	859	983	3,823
4	469	535	611	697	796	3,108
5	228	259	294	335	381	1,496
6	10	12	13	15	17	67
7	34	39	44	49	56	222
8	0	0	0	0	0	0
9	14	16	17	20	22	88
합계	5,991	6,887	7,916	9,099	10,459	40,35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되도록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2029년 기간 동안 9,503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기존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인상	117,899	143,885	175,156	213,326	259,688	909,95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5,991	6,887	7,916	9,099	10,459	40,352
합계	123,890	150,771	183,071	222,425	270,147	950,30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유공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실제 국가유공자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서 60%이하로 인상됨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편입되는 경우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따라 최근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수 증가율이 달라질 경우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